

| 투자 위험 등급 | | | | | |
|------------|-------|----------|-------|-------|----------|
| 5등급(낮은 위험)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이스트스프링 플렉서블 인컴 증권투자신탁[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트스프링 플렉서블 인컴 증권투자신탁[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이스트스프링 플렉서블 인컴 증권투자신탁[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3. 판매 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9년 2월 2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9년 3월 4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최초설정일 기준 1 좌=1 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 |
|---|-----------|
| 요약정보..... | 5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사항 | 11 |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11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11 |
| 3. 모집예정금액 | 11 |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1 |
| 5. 인수에 관한 사항..... | 11 |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11 |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2 |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12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12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12 |
| 4. 집합투자업자..... | 12 |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12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13 |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13 |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13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17 |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20 |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23 |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25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27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28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30 |
| 1. 재무정보..... | 30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30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30 |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31 |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31 |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33 |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33 |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34 |
|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34 |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34 |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36 |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36 |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39 |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39 |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42 |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43 |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44 |
| 붙임. 용어풀이 | 45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이스트스프링 물가 따라잡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므로 신중한 검토 후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트스프링 플렉서블 인컴 증권투자신탁[채권](펀드코드: CD122)

| 투자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이스트스프링 플렉서블 인컴 증권투자신탁[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법에서 정한 소규모펀드 (설정 1년 후 50억미만)인 경우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 | |
| 집합투자 기구 특징 |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의 실질가치 하락의 방지를 추구합니다.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 | |
| 집합투자업자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02-2126-3500) | | |
| 모집(판매) 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최초설정일 기준 1좌=1원) |
| 효력발생일 | 2019-03-04 |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 | | |

| 종류(Class) | 클래스 C-F | 클래스 C-V |
|-----------|----------------------|------------------------------------|
| 가입자격 | 법제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
| 판매수수료 | - | - |
| 환매수수료 | - | - |
| 전환수수료 | - | - |
| 보수 | 0.01 | 0.00 |

| | | | |
|-----------|--------|--|--------|
| (연, %) | 운용 등 | 집합투자업자: 0.0575, 신탁업자: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0125 | |
| | 기타 | 0.0000 | 0.0000 |
| | 총보수·비용 | 0.09 | 0.08 |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또는 유사펀드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3)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 | | | |
|-------------|---|-------------|---|
| 매입방법 | · 17시 이전: 제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시 경과후: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 환매방법 | · 17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로 제3영업일 지급 · 17시 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가로 제4영업일 지급 |
| 기준가격 | ·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일의 직전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investments.co.kr)· 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 |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의 실질가치 하락의 방지를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KBP국공채 0~20년 66.5% + KBP 은행채(AAA이상) 0~10년 9.5% + KBP 카드/기타금융채(A-이상) 0~5년 4.75% + KBP 회사채(A-이상) 0~5년 14.25% + KBP 콜 지수 5%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의 실질가치 하락의 방지를 추구합니다.

※ 물가연동국채(Inflation-linked Government Bond)란?

▶ 원금이 물가와 연동하여 움직이는 국채로서,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원금을 재계산한 후 이자를 산출하기 때문에 투자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채권입니다. 물가연동국채는 금리의 변화에 있어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과는 반대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상세 투자전략]

▪ 물가채 운용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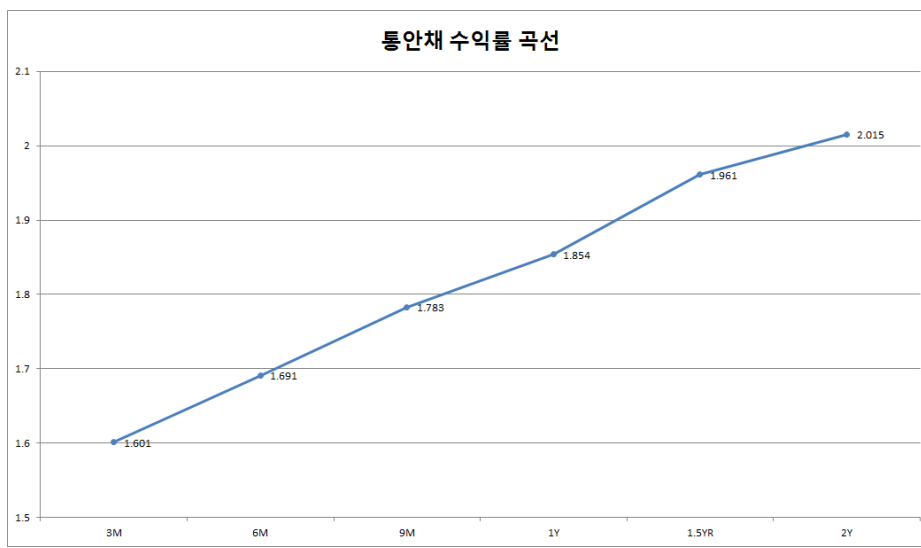
-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는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목표 편입비중을 신탁재산의 10~9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실질가치의 하락이 방어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실질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비자물가지수의 높은 상승률이 반영되는 1~3월과 7~9월을 중심으로 물가연동국채의 편입비율 확대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 금리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리스크를 완화시키며 물가채 캐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가채 중단기물을 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수익률 곡선타기(Yield Curve Riding) 전략

- 채권수익률의 만기별 차이를 활용하여 보유기간보다 긴 만기를 가진 채권에 투자하고 그 채권을 만기 이전에 매각함으로써 우상향의 기울기를 가진 수익률곡선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 수익률 곡선타기 전략 예시 (1)

보유기간이 1.5년일 경우 1.5년 만기의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1.961%이고 2년 만기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2.015%인 경우 1.5년 만기의 채권을 매입하면 보유기간수익률은 1.961%이 됩니다. 그러나, 2년 만기의 채권을 매입하고 1.5년 후 그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2.042%(캐리수익 2.015% + 매도에 따른 매매차익 0.054%*0.5년)에 해당되는 보유기간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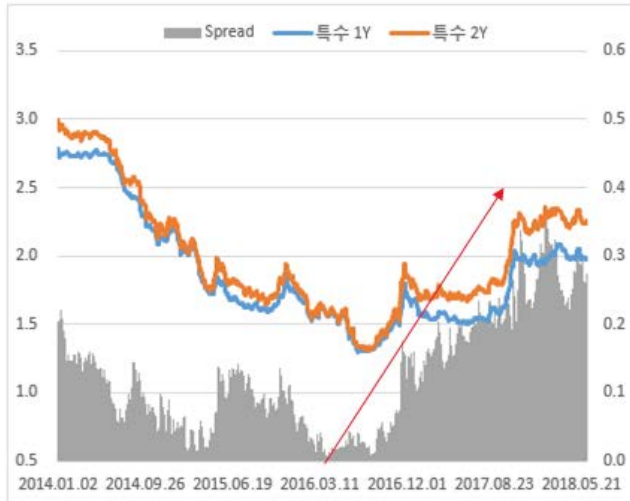


(출처: 인포맥스, 기준일: 2018-0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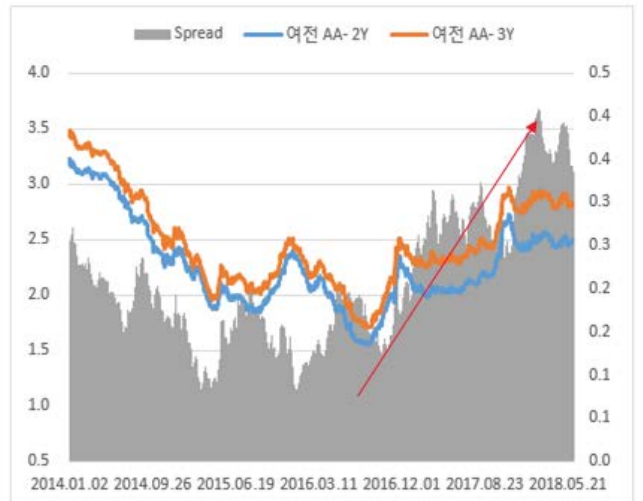
- 수익률 곡선타기 전략 예시 (2)

특수채의 경우 2년 만기와 1년 만기 간 스프레드가 차트상 30bp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캐피탈채의 경우 3년 만기와 1년 만기 간 스프레드가 차트상 40bp 수준으로 확대되며 과거대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채의 경우 2년, 캐피탈채의 경우 3년 구간에 해당되는 영역이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 특수채 : 2년 Riding Effect 우수 >



< 여전채 : 3년 Riding Effect 우수 >



(출처: 본드웹)

※해당 예시는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상기 예시와 달리 예상했던 투자전략이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크레딧 전략
 - 물가연동국채 이외에 당사 유니버스 내 우량등급(A- 이상) 채권 매입으로 만기수익률(YTM, Yield-to-maturity)을 제고합니다.
 - 운용 전략상 투자한도 내에서 자산유동화증권(신용등급 AAA 이상), 중장기물 및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수익구조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운용전문인력(2018.07.27 현재)

| 구분 | 성명 | 나이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조 | 다른 운용자산규모 | |
| 책임운용 전문인력 | 김정길 | 1972년생 | 상무 | 3개 | 1,318억 | <주요 운용경력> 채권펀드 운용 - 00.08~09.08 신한BNPP 자산운용 - 09.08~11.04 도이차자산운용 - 11.04~13.08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13.09~현재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코리아 <이력> - 서울대 |

| | | | | | | |
|-------------------|-----|--------|----|----|--------|---|
| 부책임 운용전문 인력 | 이상준 | 1987년생 | 대리 | 3개 | 6,287억 | <주요 운용경력> 채권펀드 운용 -13.10 ~ 현재 <u>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u> <이력>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과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의 채권운용2팀에서 공동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책임 하에 채권운용2팀 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3년 동안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원본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시장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국공채 등 국내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자금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를 초래하여 투자신탁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물가연동채권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가운데 하나인 물가연동국채는 일반 채권에 비해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채권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시장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시장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채권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시장수요의 급격한 위축 등으로 인해 일반국채 대비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시장매각 및 적극적인 투자비중 조절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국가위험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보다는 국내 채권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측정하게 되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5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1)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국공채 등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채권의 경우,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과 유동성 위험을 중점 적으로 관리하며, 채권별 만기에 따른 상대가치의 변화를 감안하여 펀드의 듀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유동성이 높은 채권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한편, 물가채 운용에 있어서 물가가 하락하여 원금 하락효과가 발생할 경우 물가채 비중을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운용하고, 물가가 상승하여 원금상승효과가 발생할 경우 물가채 비중을 확대하면서 물가채 운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특히,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물가채의 원금하락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물가채 비중을 최소한으로 낮추어 운용할 계획입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일반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정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eastspringinvestment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eastspringinvestments.co.kr)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
|--------|-----------------------------------|-------|
| 명칭 | 이스트스프링 플렉서블 인컴 증권투자신탁[채권] (CD122) | |
| 클래스 | C-F | C-V |
| 협회표준코드 | CD237 | CD241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이 발행된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최초설정일 기준 1좌=1원)

-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investment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
|--------|-----------------------------------|-------|
| 명칭 | 이스트스프링 플렉서블 인컴 증권투자신탁[채권] (CD122) | |
| 클래스 | C-F | C-V |
| 협회표준코드 | CD237 | CD241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 사항 |
|------------|----------------------------------|
| 2018.08.31 | 최초 설정 |
| 2019.03.04 |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HSBC펀드서비스→신한아이타스)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사명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 (대표전화 : 02-2126-3500) |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8.07.27 현재)

1) 운용전문인력

| 구분 | 성명 | 나이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 운용자산규모 | |
| 책임운용 전문인력 | 김정길 | 1972년생 | 상무 | 3개 | 1,318억 | <주요 운용경력> 채권펀드 운용 - 0008~0908 신한BNPP 자산운용 - 0908~1104 도이치자산운용 - 1104~1308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1309~현재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코리아 <이력> - 서울대 |

| | | | | | | |
|-------------------|-----|--------|----|----|--------|--|
| 부책임 운용전문 인력 | 이상준 | 1987년생 | 대리 | 3개 | 6,287억 | <주요 운용경력> 채권펀드 운용 -13.10 ~ 현재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이력>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과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의 채권운용2팀에서 공동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책임 하에 채권운용2팀 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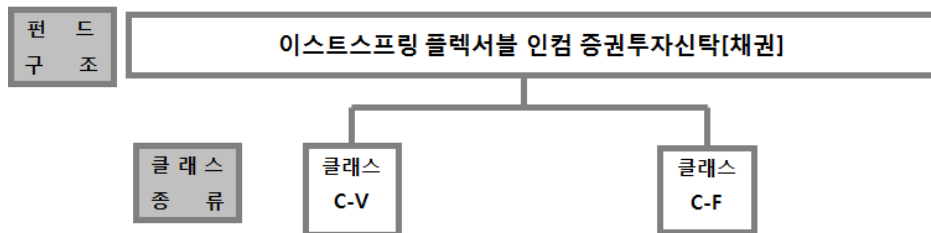
※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3년 동안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동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투자신탁(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이 수익증권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클래스 | 최초 설정일 | 가입자격 |
|-----|-----------|------------------------------------|
| C-F | 미설정 | 법제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 C-V | 미설정 |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

주1) 이 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의 실질가치 하락의 방지를 추구합니다. 수익자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은 발행자의 부도, 채무불이행, 파산, 신용등급 하락의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위험과 시중실세금리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 | 투자비율 | 투자대상 내역 |
|--|-------------|-----------------------------|--|
| ① | 채권 | 60% 이상 |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
| ② | 자산유동화 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③ | 어음 |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 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 기업어음증권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은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0 이상이어야 한다) |
| ④ | 채권관련장내 파생상품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 관련 장내파생상품 |
| ⑤ | 집합투자증권 | 30% 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
| ⑥ |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 |
| ⑦ | 증권의 대여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 |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
| 단기대출 ^{주 1)} ,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 , 환매조건부매수 ^{주 3)} 등 | |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 주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주3)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②, ③, ⑤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 18 조제 6 호 내지 제 7 호, 제 19 조제 2 호내지제 4 호 및 제 7 호내지제 10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 17 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 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대상 종류 | 투자제한의 내용 | 적용 예외 |
|----------------|---|---------------|
|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
| 동일종목투자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주식과 주식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 |
|---------------|---|-----------------------|
| | <p>다만,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p> <p>나.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p> | |
| <p>파생상품투자</p> | <p>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법 시행령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p> |
| <p>집합투자증권</p> | <p>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 |

| | | |
|-----------|---|----------------|
|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
| 계열회사 발행증권 | 법시행령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 후순위채권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의 실질가치 하락의 방지를 추구합니다.

※ 물가연동국채(Inflation-linked Government Bond)란?

▶ 원금이 물가와 연동하여 움직이는 국채로서,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원금을 재계산한 후 이자를 산출하기 때문에 투자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채권입니다. 물가연동국채는 금리의 변화에 있어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과는 반대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상세 투자전략]

- 물가채 운용전략
-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는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목표 편입비중을 신탁재산의 10~9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실질가치의 하락이 방어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실질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비자물가지수의 높은 상승률이 반영되는 1~3월과 7~9월을 중심으로 물가연동국채의 편입비율 확대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 금리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리스크를 완화시키며 물가채 캐리¹⁾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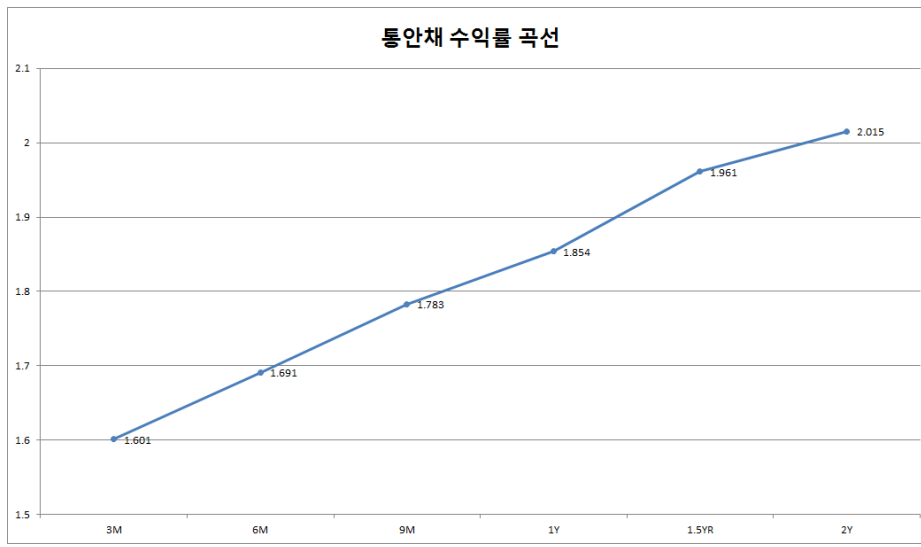
중단기물을 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수익률 곡선타기(Yield Curve Riding) 전략

- 채권수익률의 만기별 차이를 활용하여 보유기간보다 긴 만기를 가진 채권에 투자하고 그 채권을 만기 이전에 매각함으로써 우상향의 기울기를 가진 수익률곡선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 수익률 곡선타기 전략 예시 (1)

보유기간이 1.5년일 경우 1.5년 만기의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1.961%이고 2년 만기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2.015%인 경우 1.5년 만기의 채권을 매입하면 보유기간수익률은 1.961%이 됩니다. 그러나, 2년 만기의 채권을 매입하고 1.5년 후 그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2.042%(캐리수익 2.015% + 매도에 따른 매매차익 $0.054\% \times 0.5\text{년}$)에 해당되는 보유기간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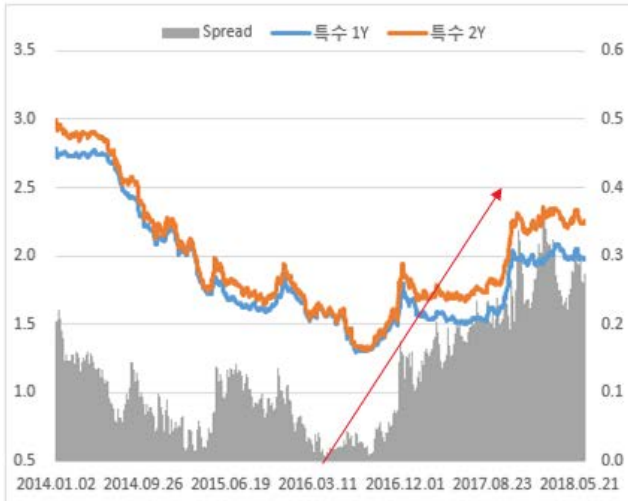


(출처: 인포맥스, 기준일: 2018-0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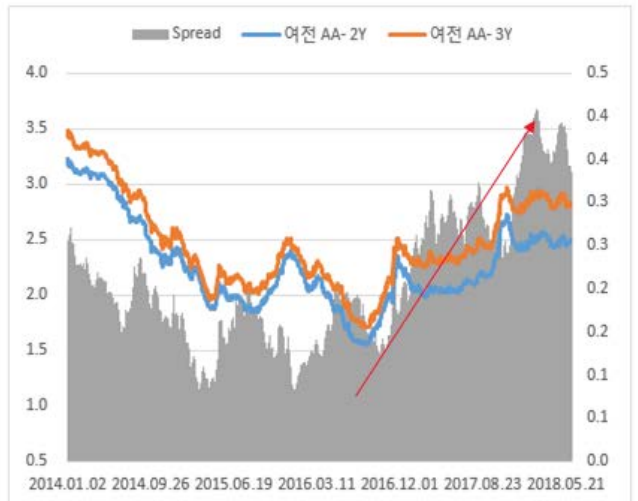
- 수익률 곡선타기 전략 예시 (2)

특수채의 경우 2년 만기와 1년 만기 간 스프레드가 차트상 30bp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캐피탈채의 경우 3년 만기와 1년 만기 간 스프레드가 차트상 40bp 수준으로 확대되며 과거대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채의 경우 2년, 캐피탈채의 경우 3년 구간에 해당되는 영역이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 특수채 : 2년 Riding Effect 우수 >



< 여전채 : 3년 Riding Effect 우수 >



(출처: 본드웹)

※해당 예시는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상기 예시와 달리 예상했던 투자전략이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크레딧 전략**

- 물가연동국채 이외에 당사 유니버스 내 우량등급(A- 이상) 채권 매입으로 만기수익률(YTM, Yield-to-maturity)을 제고합니다.
- 운용 전략상 투자한도 내에서 자산유동화증권(신용등급 AAA 이상), 중장기물 및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1) 캐리란, 채권 보유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채권의 만기가 가까워짐에 따른 채권 단가의 상승효과를 말함

※ 비교지수(벤치마크) : KBP국공채 0~20년 66.5% + KBP 은행채(AAA이상) 0~10년 9.5% + KBP 카드/기타금융채(A-이상) 0~5년 4.75% + KBP 회사채(A-이상) 0~5년 14.25% + KBP 콜 지수 5%

- 동 펀드에서 사용하는 KBP 지수는 시가총액에 근거한 총수익지수로서 한국자산평가의 채권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 KBP 지수 국공채 0~20년: KBP지수 중 국공채 지수로서 잔존만기 20년 이하의 채권으로 구성된 총수익지수 (국공채: 국채, 지방채, 특수채로 구성)
- KBP 지수 은행채(AAA이상): KBP지수의 은행채(AAA이상) 중 잔존만기 10년 이하의 채권으로 구성된 총수익지수
- KBP 지수 카드/기타금융채(A-이상) : KBP 지수의 카드채와 기타금융채 중 신용등급 A- 이상과 잔존만기 5년 이하의 채권으로 구성된 총수익지수
- KBP 지수 회사채(A- 이상): KBP 지수의 회사채 중 신용등급 A- 이상과 잔존만기 5년 이하의 채권으로 구성된 총수익지수

-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상기 지수를 비교지수(벤치마크)로 선정하였습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수익률은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홈페이지(www.eastspringinvestments.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벤치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

국공채 등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채권의 경우,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과 유동성 위험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채권별 만기에 따른 상대가치의 변화를 감안하여 펀드의 듀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유동성이 높은 채권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한편, 물가채 운용에 있어서 물가가 하락하여 원금 하락효과가 발생할 경우 물가채 비중을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운용하고, 물가가 상승하여 원금상승효과가 발생할 경우 물가채 비중을 확대하면서 물가채 운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특히,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물가채의 원금하락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물가채 비중을 최소한으로 낮추어 운용할 계획입니다.

※ 듀레이션(Duration)이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서, 금리가 변동하는 데에 따른 채권가격의 위험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동 투자신탁은 평균 듀레이션 3.6년 기준으로 ±1년 범위 내에서 금리 인상기에는 듀레이션을 축소하고, 금리 하락시에는 듀레이션을 확대하며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수익구조 : 해당 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의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
|------------------|---|
| 원본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시장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국공채 등 국내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자금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를 초래하여 투자신탁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이자율변동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 비하여 이자율 변동시 가격 변동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 발행자 및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 보유하고 있는 증권,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 위험 |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의 거래 중단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투자(노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지렛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국가위험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보다는 국내 채권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 물가연동채권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가운데 하나인 물가연동국채는 일반 채권에 비해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채권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시장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시장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채권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시장수요의 급격한 위축 등으로 인해 일반국채 대비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시장매각 및 적극적인 투자비중 조절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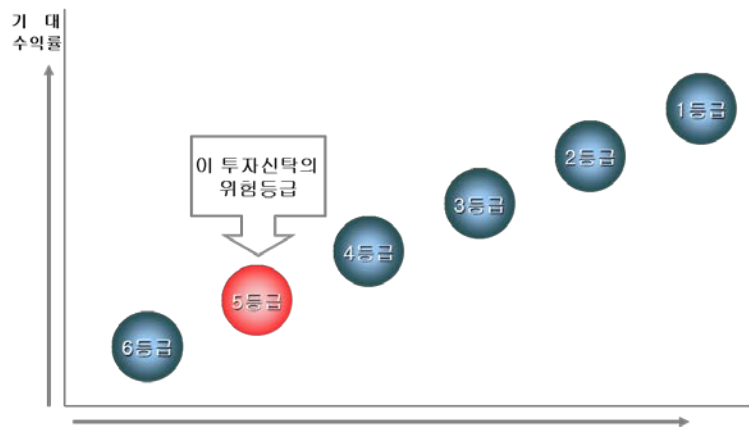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일(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기준가격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환매청구 제한 및 환매연기 위험 | 대량환매의 발생 등으로 인해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 전부해지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측정하게 되며, 국내 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5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투자신탁 등 보다 낮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율 변동 위험과 발행자 신용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추후 이 투자신탁이 설정 후 3년이 경과했을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등급분류기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 위험등급 | 위험정도 | 상세 설명 |
|------|----------|---|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 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

| | | |
|-----|----------|--|
| | |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 높은 위험 |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이하 동일한 위험의 자산을 "고위험자산"으로 칭함)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 보통 위험 |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이하 동일한 위험의 자산을 "중위험자산"으로 칭함)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 | 낮은 위험 |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이하 동일한 위험의 자산을 "저위험자산"으로 칭함)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6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 단기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자산 및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의 상품개발위원회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 (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등급을 기초로 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 분류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내부 기준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으로 판매회사가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별도로 정한 투자위험등급 분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별 | 가입자격 |
|---------|------------------------------------|
| 클래스 C-F | 법제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 클래스 C-V |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집합투자증권을 교부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집합투자증권을 교부

| 제1영업일 | 제2영업일 | 제3영업일 |
|-------------------|------------------------|------------------------|
| D | D+1 | D+2 |
| 자금납입일 (5시 이전) |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 |
| 자금납입일 (5시 경과후) | |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제1영업일 | 제2영업일 | 제3영업일 | 제4영업일 |
|------------------|-------|---------------------|-------|
| D | D+1 | D+2 | D+3 |
| 환매청구일 (5시 이전) | |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

| | | | |
|-------------------|--|--|--------------------|
| 환매청구일 (5시 경과후) | | | 기준가격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

(다) 판매회사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는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2영업일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 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일의 직전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않습니다. |
|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공시방법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장내파생상품 |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비상장채권 |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 |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 단,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자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분 |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 | 지급 시기 |
|----------|----------------|--|-------|
| | 클래스C-F, 클래스C-V | | |
| 선취판매 수수료 | - | | 매입시 |
| 후취판매 수수료 | - | | - |
| 환매수수료 | - | | 환매시 |

※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클래스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클래스 |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 기타 비용 ¹⁾ | 총보수 및 비용 | 증권거래비용 ²⁾ |
| 클래스C-F | 연 0.0575% | 연0.01% | 연 0.01% | 연 0.0125% | 연 0.0000% | 연 0.09% | 연 0.0000% |
| 클래스C-V | | 연0.00% | | | 연 0.0000% | 연 0.08% | 연 0.0000% |
| 지급시기 | 매3개월 | | | | 사유발생시 | 매3개월 | 사유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 및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원)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년차 | 3년차 | 5년차 | 10년차 |
|---------------|-------|--------|--------|---------|
| 클래스 C-F | 9,225 | 29,128 | 51,216 | 118,300 |
| 클래스 C-V | 8,200 | 25,892 | 45,526 | 105,156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을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②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 펀드내 자산의 평가·매매이익의 결산·분배금 유보로 인해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하면서 수익자의 환매청구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

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boxed{\text{환급세액}} = \boxed{\text{외국납부세액}} \times \boxed{\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 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무정보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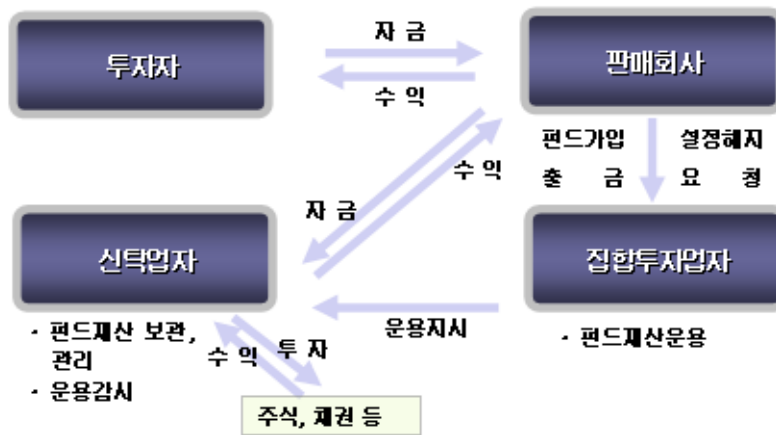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 | |
|----------|---|
| 회사명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 [연락처 : 02-2126-3500, www.eastspringinvestments.co.kr] |
| 회사 연혁 | 2001.02 굿모닝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2.07 제로인 2002년 상반기 결산 채권형 1위 운용사 2002.10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로 대주주변경 2002.11 PCA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 변경 2004.07 제로인 선정 2004년 상반기 주식형 1위 운용사 2005.01 한경비즈니스 선정 2004년 결산 베스트 주식형펀드 운용사 부문 2위 2005.01 제로인 선정 2004년 결산 주식형펀드 운용사부문 2위 2005.12 머니투데이 베스트 펀드상 수상 -주식형펀드 베스트 운용사 부문 2006.02 2006 Asia Asset Management Awards수상 (Best of Best Awards - 한국 주식형(3년) 베스트 운용사 선정 Best of Best Country Awards - PCA 뉴실크로드펀드 Korea부문 Most Innovative Product로 선정) 2008.12 제로인 선정 2008년 Fund Award 수상 - 아시아태평양주식형 및 중국주식형 펀드 2009.12 머니투데이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PCA 스탠다드 플러스 증권 펀드(국내 채권형 부문) 2010.07 PCA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010.12 머니투데이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PCA China Dragon A Share 증권 펀드(해외 주식형 부문) 2012.02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로 사명 변경 2012.03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증권 펀드(국내 대형주 부문) |

| | |
|-------------|---|
| | <p>2015.01 2014 Asia Asset Management Awards수상 (Best of Best Country Awards – Best Korean Equity Manager로 선정)</p> <p>2015.02 제로인 선정 2015년 펀드 어워즈 수상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 펀드(중국 주식형 부문)</p> <p>2015.02 매일경제 선정 2014 한국펀드대상 우수상 수상(국내혼합형펀드 부문)</p> <p>2015.03 2015년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증권 펀드(국내 대형주 부문)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 펀드(중국 주식형 부문)</p> <p>2015.03 AsianInvestor 2015 Korea Awards 수상 - 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 펀드(Best New Fund Launch 부문)</p> <p>2016.02 제로인 선정 2016년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수상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 펀드(중국 주식형 부문)</p> <p>2016.02 Korea Wealth Management Awards - 올해의 채권형펀드 운용사</p> <p>2017.03 2017년 모닝스타어워드 펀드상 수상 (중국 주식형 부문)</p> |
| 자본금 | 227억원 |
| 주요주주 |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 100% |
| 현황 | |

※ 영국 프루덴셜 그룹은 영국의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그룹으로 보험·자산운용 및 금융서비스를 직접 혹은 자회사와 계열사 등을 통하여 지난 160년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프루덴셜 (Prudential Financial, Inc.)과는 아무런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 재무상태표 | | | | 포괄손익계산서 | | | |
|------------------|---------------|---------------|---------------|------------------|--------|--------|--------|
| 계정과목 | FY2017 | FY2016 | FY2015 | 계정과목 | FY2017 | FY2016 | FY2015 |
| 자산총계 | 53,109 | 52,173 | 49,387 | 1. 영업수익 | 28,359 | 29,027 | 29,220 |
| 1. 현금 및 예치금 | 19,944 | 23,616 | 26,779 | 2. 영업비용 | 22,737 | 18,861 | 20,321 |
| 2. 유가증권 | 0 | 0 | 0 | 3. 영업이익 | 5,622 | 10,167 | 8,898 |
| 3. 대출채권 | 0 | 0 | 0 | 4. 영업외수익 | 13 | 321 | 0 |
| 4. 유형자산 | 542 | 599 | 406 | 5. 영업외비용 | 65 | 305 | 234 |
| 5. 기타자산 | 32,624 | 27,958 | 22,201 | 6. 경상이익 | 5,570 | 10,183 | 8,664 |
| 부채 및 자본총계 | 53,109 | 52,173 | 49,387 | 7. 특별이익 | 0 | 0 | 0 |
| 1. 예수부채 | 213 | 313 | 149 | 8. 특별손실 | 0 | 0 | 0 |
| 2. 기타부채 | 8,196 | 7,977 | 11,279 | 9. 법인세자감전 순이익 | 5,570 | 10,183 | 8,664 |
| 3. 부채총계 | 8,409 | 8,291 | 11,428 | 10. 법인세비용 | 1,253 | 2,264 | 1,946 |
| 4. 자본금 | 22,700 | 22,700 | 22,700 | 11. 당기순이익 | 4,318 | 7,919 | 6,718 |
| 5. 이익잉여금 | 21,847 | 21,029 | 15,110 | | | | |
| 6. 자본잉여금 | 190 | 190 | 186 | | | | |
| 7. 자본조정 | -37 | -37 | -37 | | | | |
| 8. 자본총계 | 44,700 | 43,882 | 37,959 | | | | |

라. 운용자산 규모 (2018.06.30 기준, 단위: 억좌)

| 종류 | 증권 | | | | | 특별자산 | MMF | 총계 |
|-----|--------|-------|--------|-------|-------|-------|-------|--------|
|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재간접형 | 파생형 | | | |
| 수탁고 | 11,447 | 2,578 | 21,748 | 1,537 | 5,328 | 1,673 | 5,223 | 49,536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연락처 : 1588-1599 |
|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standardchartered.co.kr |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등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신한아이타스(주) |
|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연락처: 02-2180-0400 |
|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 www.shinhanaitas.com |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산정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위반 및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회 사 명 | 한국자산평가 | NICE피앤아이 | KIS채권평가 | 에프앤자산평가 |
|--------------------|--|---|---|---|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서울특별시 율패로 88(운니동 98-5) 연락처: 02-399-3350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여의도동) 연락처: 02-398-3900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여의도동) 연락처: 02-3215-1400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인사동) 연락처: 02-721-5300 |
|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참조) | www.koreaap.com | www.nicepricing.co.kr | www.bond.co.kr | www.fnpricing.com |

나.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1) 수익자에게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 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목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은 제외)
-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5)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2) (1)의 3) 및 4)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로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제247조제5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목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investments.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광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광고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단,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단,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등 법제87조제2항및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구 분 | 내 용 |
|------------|---|
| <투자증권거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p>[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p> <p>가.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마케팅비용 라.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p> |
| <장내파생상품거래> |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 |
|----------|--|
| 투자주체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
| 투자목적 | 최소 운용가능 규모를 달성하여 정상적인 펀드 운용을 도모하고, 운용실적(Track Record)을 축적하고자 함 |
| 투자시기 | 최초 설정일 |
| 투자금액 | 2억원 |
| 투자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 |
| 투자금 회수계획 | 투자기간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

주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① 당연 해지사유 발생
 - ②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되는 경우
 - ④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 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⑤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 주2) 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회수할 예정이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주3)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4)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액은 상기의 의무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의무투자기간 이전에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용어 | 내용 |
|------------------|--|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청구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금리스왑 |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금융투자협회 코드 |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뿐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집합투자기구의 잔존 집합투자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레버리지 효과 | 파생상품을 이용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하는 것과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합니다. |
| 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업자 보수, 신탁업자 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선물환거래 |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
| 설정 |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집합투자규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
| 수익자총회 |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수탁고 | 집합투자기구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 |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전환사채 |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간주 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
| 증권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부동산 관련 주식 또는 채권 및 특별 자산을 제외하며, 제외대상 자산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지분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 집합투자 |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 채무증권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 |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매입신청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 판매수수료 |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
| 해지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 환매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이후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기한까지 환매가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환매수수료 |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이후 단기간 이내 또는 만기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익금 또는 환매대금의 일정 수준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안정성과 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귀속 됩니다. |
| 환매조건부채권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 | |
|-----|---|
| 환헤지 | <p>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자산을 사들이게 되며, 운용기간 중에 환율이 하락(원화강세)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p> |
|-----|---|